

# 일본의 장애인 소득보장제도

김성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최미영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원

## 1. 들어가며

인간의 기본적인 삶을 유지하는데 있어 소득 보장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특히 경제활동을 통해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소득보장은 매우 절실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장애인은 오랫동안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져 왔으며, 비장애인에 비해 취업이나 소득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한 여건에서 생활하고 있다. 따라서 장애인에 대한 소득보장은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에 지극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는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생활에 필요한 소득을 보충하고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직·간접적인 소득보장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직접적인 소득보장제도로 사회보험에서의 장애연금, 장애일시(보상)금, 공공부조의 일환으로 실시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각종 장애수당, 그리고 간접적 소득보장제도로 세제할인 등 다양한 노력들을 시도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는 장애인 소득보장으로 장애기초연금, 장애후생(공제)연금, 장애로 인한 추가 부담을 경감해 주기 위해 지급되는 각종 수당제도, 생활보호, 노동재해(노재) 보상, 세제우대조치가 있고, 그외 기타 소득보장으로 공적 연금과 별도로 장애인 부양보호자가 사망 또는 중증장애를 입었을 경우를 대비해서 생존 중에 매월 일정한 부금을 납입하여 장애인에게 종신 일정액수의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가 있다.

현재 새 정부에서는 장애인의 소득보장 강화 방안 중 하나로 기존 소득보장제도 이외에 장애 연금을 받을 수 없는 장애아동이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경제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특별보호연금<sup>1)</sup>을 지급하는 제도 도입을 제시하였다. 이는 현재 일본에서 안정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서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본 고에서는 우리나라와 생활문화면에서 비슷한 일본을 대상으로 장애인의 지역사회 경제생활 지원을 위해 다양하게 실시되고 있는 장애인의 직·간접적 소득보

1) 동특별보호연금 가입시 국가가 납입액의 30% 지원

장제도를 소개하고 더불어 한국의 장애인 소득 보장제도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 2. 일본의 장애인 소득보장 동향

### 1) 연금제도에 의한 소득보장

일본은 1961년 국민연금 제도화로 전국민연금체제를 맞이했고, 1986년에는 기초연금으로 자리매김 되었다. 그 결과 20~60세 미만의 전 국민은 국민연금에 가입해 노령, 장애, 사망에 따르는 기초연금을 받게 되었고, 그 외 민간피고용자(회사원)는 후생연금, 공무원은 공제연금을 연

장 가입해서 그 가입기간과 평균표준보수에 기초해 피고용자(회사원 또는 공무원)는 보수비례 부분의 후생연금, 또는 공제연금을 각각 받게 되었다.

피보험자기간 중 발생한 장애에 대해서는 선천적인 장애나 질병, 부상, 약물에 의한 피해 등 후천적인 장애여부와 상관없이 국민연금은 1~2급의 장애등급, 후생연금이나 공제연금은 1~3급의 장애등급으로 각각 인정되면 자영업, 자유업, 학생, 전업주부는 장애기초연금을, 피고용자(회사원 또는 공무원)는 장애후생연금이나 장애공제연금을 받을 수 있다(표 1)참조.

장애기초연금 지급액은 노령기초연금의 만기액(최장 가입한 금액)과 같다. 다만, 이 장애기초

표 1. 장애등급과 장애연금

장애 정 비	1급*	1	양눈 시력의 합이 0.04 이하인 자 ⋮	→ 장애후생연금 (후생연금)
		11	신체기능의 장애, 병상 혹은 정신장애가 중복되는 경우 그 상태가 전각호와 같은 정도 이상으로 인정되는 자	
	2급*	1	양눈 시력의 합이 0.05이상 0.08이하인 자 ⋮	→ 장애후생연금 (후생연금)
		17	신체기능 장애, 병상 혹은 정신장애가 중복되는 경우 그 상태가 전각호와 같은 정도 이상으로 인정되는 자	
	3급	1	양눈의 시력이 0.1 이하인 자 ⋮	→ 장애후생연금 (후생연금)
		14	병이 낫지 않고, 신체기능 또는 정신, 혹은 신경계통에 노동이 제한을 받거나 또는 노동에 제한을 더하는 것을 필요로 하는 정도의 장애를 가진 자로 후생노동대신이 정하는 자	

주: 장애기초연금(국민연금)  
자료: 川村匡由·米山岳廣, 『장애자복지론』, ミネルヴァ書房, 2005.

연금은 국민연금 가입(피보험자)기간 중 보험료 체납이 3분의 1이상 없는 것을 수급요건으로 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65세 이상이면 국민연금으로부터 노령기초연금을 받을 권리를 취득한다. 그러나 같은 급부사유로 동일한 제도로부터 2중으로 연금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때까지 장애기초연금을 받고 있으면 노령기초연금이 지급되는 시점부터는 장애기초연금은 지급이 정지된다.

그러나 민간피고용자(회사원)이나 공무원은 후생연금, 혹은 공제연금에 이종으로 가입하고 있어 재직 중 질병이나 부상, 사고 등으로 장애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장애기초연금과는 별도로 장애후생연금, 혹은 장애공제연금도 받게 된다.

게다가 장애후생연금과 장애공제연금의 금액은 각각의 평균표준보수액에 후생연금, 혹은 공제연금의 가입기간(피보험자기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지급된다. 18세 미만의 어린이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수에 따라 일정액이 가산된다.

또 국민연금의 가입이 임의였던 구제도 당시 미가입인 채 장애를 입었지만, 국민연금으로부터 장애기초연금을 받지 않았던 학생이나 전업주부에 대해서는 2005년 4월부터 특별장애급부금이 지급되게 되었다. 이것은 「특정장애인에 대한 특별장애급부금의 지급에 관한 법률(무연금 장애인구제법)」이 2004년 12월에 성립되어 2005년 4월에 시행되었기 때문으로 1급은 월 5만엔, 2급은 월 4만엔이 지급되고 있다.

## 2) 각종 수당제도에 의한 소득보장

1986년 국민연금법 및 후생연금보험법 개정으로 중증장애인에게 지급해 오던 복지수당 개혁이 이루어졌다. 특히 특별장애인수당과 장애기초연금의 지급대상이 되지 않았던 중증장애아동을 대상으로 복지수당이 장애아 복지수당으로 개편되었다. 동시에 특별장애인수당의 지급액이 복지수당과 비교하여 2배정도 인상되었다. 그리고 장애아동을 둔 부모에게는 특별아동부양수당을 지급하고, 장애관련수당은 매년 물가연동제도에 의해 불가상승률을 고려한 금액으로 지급하고 있다. 그리고 5년마다 실시하는 재정재계산제도에 의거 생활수준 향상과 임금 상승에 따라 지급금액을 개선하여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일본의 장애인에 대한 각종 장애관련 수당은 장애인의 장애로 인한 특별부담, 즉 추가비용의 지출을 보전하여 장애인이 경제적으로 자립하고 장애인복지를 증진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장애로 인한 특별부담의 경감을 위해 지급되고 있는 몇 가지 장애 관련 수당제도에 대해 알아보려고 한다.

### (1) 특별장애인수당 · 복지수당

특별장애인수당은 일상생활에 상시특별개호를 필요로 하는 20세 이상 재택중증장애인에게 지급되는 수당으로, 복지 향상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특별아동부양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법률

에 근거해서 1986년 4월부터 실시되었다.

이 수당과 유사한 제도로써 1974년에 동법으로 설치된 특별복지수당이 있는데, 이것은 중증의 지적장애와 신체장애를 가진 중복장애인에게 지급되는 제도이며, 1975년에 정신 또는 신체 중증장애인의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한 복지수당제도로 신설 · 발전하게 되었다.

그 후, 장애인 자립생활의 기반이 되는 소득보장제도를 확립하기 위해 연금제도개혁 중에 국민연금법 등에 장애기초연금이 창설됨에 따라 성인의 복지수당제도도 재편성하여 특별장애인수당을 신설 · 실시하게 되었다.

장애인수당의 취지는 장애인 복지조치의 일환으로 장애인의 자립생활 기반을 확립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서 재택의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그 현저한 중증의 장애에 의해 발생하는 특별한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수당이 지급되는 것

으로, 장애기초연금과의 병합도 가능하게 되었다. 특별장애인수당의 금액은 월액 2만 6,440엔(2007년 4월 기준)이다.

또한 특별장애인수당이 20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20세 미만의 재택 중증장애아동에 대해서는 종래의 복지수당을 복지수당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존속시켰다. 그래서 종래의 복지수당수급자 중 특별장애인수당의 지급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또한 장애기초연금이 지급되지 않는 장애인에 대해 경과조치<sup>2)</sup>로써 경과적 복지수당이 지급되게 되었다. 복지수당 및 경과조치에 의한 복지수당액은 모두 월 1만 4,380엔(2007년 4월 기준)이다.

### (2) 특별아동부양수당

특별아동부양수당은 당초 중증 지적장애아동

표 2. 특별장애인수당 등 수당액 · 수급자수의 추이

(단위: 엔, 명)

구분	특별장애인수당		복지수당		경과적 복지수당	
	수당액	수급자수	수당액	수급자수	수당액	수급자수
1986년	20,800	55,114	11,550	54,942	11,550	117,387
1990년	22,760	76,611	12,380	52,915	12,380	64,563
1995년	26,230	90,950	14,270	50,023	14,270	34,650
2000년	26,860	103,351	14,610	54,525	14,610	20,815
2005년	26,520	105,641	14,430	60,723	14,430	12,320
2006년	26,440	107,311	14,380	61,993	14,380	11,063

자료: 후생노동성사회 · 원호국장애보건복지부조사

2) 경과조치(経過措置)란 '법령 · 규칙 등을 제정 · 개정 · 폐지하는 경우에 폐지 · 변경 · 신설되는 법령 등의 규정 내용을 적용함에 있어 그 범위 · 한계 · 기간 등을 명확히 하여 법령 등의 개정 · 폐지 · 신설에 따른 적용상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과도기적 규정을 두는 것을 말함.

해외제도 하이라이트

을 대상으로 지급되던 제도로써 1964년 9월에 신설되어, 1966년에는 지급대상을 중증 신체 장애아동까지 확대·지급함으로써 정신 또는 신체장애를 가진 장애아동의 복지증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20세 미만의 정신 또는 신체 장애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부 또는 모에게, 부모가 없어 보호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양육자(그 아동과 동거하며 간호하고 있고,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자)를 지급대상으로 한다.

이후 1972년 10월부터 대상 장애범위를 확대해 종래의 중증지적장애와 신체장애(외부장애에 한함) 이외에 내장질환 등의 내부장애, 정신장애와 신체장애의 중복장애를 포함하고 있다. 그 결과, 심장기능장애, 결핵성 질환, 신장질환, 혈액질환 등의 신체장애, 통합실조증, 간질, 조울증 등의 정신장애 등을 가진 중증 장애아동에게도 특별아동부양수당이 지급되게 되었다.

1973년 9월까지의 수급자(대상 장애아의 부모나 양육자)가 공적연금급부(국민연금법의 복지연금, 아동부양수당법에 의한 아동부양수당 제외)를 받고 있고, 대상 장애아동이 부모의 사망으로 지급되는 공적연금급부를 받고 있을 때 수당이 지급되지 않았지만, 그해 10월부터는 대상 장애아동이 장애를 지급사유로 하는 공적연금급부를 받고 있는 경우 이외는 다른 공적연금급부를 받고 있어도 특별아동부양수당이 지급되게 되었다.

1975년 10월부터는 일본 국민이 아닌 장애아동도 새롭게 지급대상이 되었고, 동시에 종래 대상 장애아동의 범위는 중증장애를 가진 아동뿐이었지만, 중급정도의 장애를 가진 아동(2급)도 지급대상이 되었다.

1982년 1월부터는 난민조약 가입에 따라 수급자의 국적요건이 철폐되어 일본국민이 아닌 자도 일본국내에 주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는 지급대상이 되었다.

1989년 12월부터는 아동부양수당에도 자동물가슬라이드제가 도입되었고, 2006년도 말 현재 수급자수는 16만 8,558명, 지급대상아동수는 17만 4,141명이 되고 있다(표 3)참고.

장애유형별로 지적장애가 거의 60%를 차지하고 있고(표 4)참고), 지급되는 수당월액은 2007년도 기준으로 1급 중증 1명당 5만 750엔, 2급 중증 1명당 3만 3,800엔이다.

상기 특별장애인수당·복지수당, 특별아동부양수당, 그리고 1986년에 복지수당제도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적용에 의해 종래의 복지수당을

표 3. 장애정도별 특별아동부양수당지급 대상 아동수의 추이 (단위: 명)

구분	총수	1급	2급
1985년	124,861	80,223	44,638
1990년	128,131	80,089	48,042
1995년	127,554	78,208	49,346
2000년	145,159	87,190	57,969
2005년	168,510	96,876	71,634
2006년	174,141	98,401	75,740

자료: 후생노동성사회·원호국장애보건의복지부조사

Social Services Highlight

표 4. 장애유형별 특별 동부양수당지급 대상 아동수의 추이

구분	총수	지적장애	신체장애	기타
1985년	124,861	62,195	45,573	17,093
1990년	128,131	67,162	43,258	17,711
1995년	127,554	69,336	40,271	17,947
2000년	145,159	83,210	41,399	20,550
2005년	168,510	100,761	42,422	25,327
2006년	174,141	105,098	42,332	26,711

주: '기타'는 내부장애, 정신장애, 복합장애를 포함  
자료: 후생노동성사회·원호국장애보건의복지부조사

받고 있던 20세 이상의 상시 개호를 필요로 하는 중증장애인이 특별장애인수당의 지급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장애기초연금도 받을 수 없는 경우 경과적으로 복지수당(경과조치분)을 지급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표 5)와 같다.

표 5. 복지수당 등의 개요

구분	특별장애인수당	복지수당	복지수당 (경과조치분)	특별아동부양수당
목적	특별장애인에 대한 복지조치의 일환으로 중증장애로 필요한 정신적, 물질적인 특별한 부담경감을 위해 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특별장애인의 복지향상을 꾀함.	중증 장애아동에 대해 그 장애 때문에 필요한 정신적, 물질적인 특별한 부담의 경감을 위해 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중증 장애아동의 복지향상을 꾀함.	중증장애에 대해 그 장애 때문에 필요한 정신적, 물질적인 특별한 부담의 경감의 도움으로서 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중증장애인의 복지향상을 꾀함.	정신 또는 신체에 장애를 갖는 아동에 대해서 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써 아동의 복지 증진을 꾀함.
지급 대상자	정신 또는 신체에 중증 장애로 인해 일상생활에 상시특별개호를 필요로 하는 상태에 있는 재택의 20세 이상의 자	정신 또는 신체에 중증 장애로 인해 일상생활에 상시특별개호를 필요로 하는 상태에 있는 재택의 20세 미만의 자	20세 이상의 종래의 복지수당 지급자격자 중 특별장애인수당의 지급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장애기초연금도 지급받지 않는 자	20세 미만으로 정신 또는 신체에 중정도(中程度)이상의 장애를 가진 아동의 가정으로 감호, 양육하고 있는 부모 또는 그 외의 자*
수당액(월액) 2003년 4월~	26,620엔	14,480엔	14,480엔	1급 51,100엔 2급 34,030엔
소득제한 2002년의 년간 수입	- 지급자격자(단위세대) 518.0만엔 - 부양의무자(2인세대) 859.6만엔	- 지급자격자(단위세대) 518.0만엔 - 부양의무자(2인세대) 859.6만엔	- 지급자격자(단위세대) 518.0만엔 - 부양의무자(2인세대) 859.6만엔	- 지급자격자(4인세대) 770.7만엔 - 부양의무자(6인세대) 954.2만엔

주: 종래의 장애복지연금수급자이며 아동부양수당 및 복지수당을 수급하고 있던 모(장애인)와 어린이 1인, 부(장애인)와 어린이 1인, 모(장애인)와 어린이 1인 세대의 경우, 장애기초연금제도의 제도화에 의해 지급액이 감액됨에 따라 급여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특례적으로 복지조치(경과조치분)가 지급

**(3) 특별장애급부금**

국민연금제도의 발전과정에서 국민연금이 가입할 수 없어 장애기초연금 등을 수급하고 있지 않은 장애인을 대상으로 복지적 조치로서 특별장애급부금제도가 2005년도에 제정되었다.

지급 대상조건은 다음의 ① 또는 ②에 해당하는 자이며, 국민연금이 임의가입하지 않았던 기간에 초진일이 있어 현재 장애기초연금의 1급 또는 2급 상당의 장애상태에 있는 자이다.

- ① 1991년 3월 이전에 국민연금임의가입 대상자였던 학생
- ② 1986년 3월 이전에 국민연금임의가입 대상자였던 피고용자(후생연금, 공제조합 등의 가입자)의 배우자

2007년도의 지급액은 1급 장애는 기본 월 5만 엔, 2급 장애는 기본 월 4만엔으로 자동차가슬라이드가 적용되고, 전국고고부담이다. 본인의 소득이 일정액 이상 이거나 노령연금 등의 지급을 받고 있을 때는 지급제한이 있다. 또한 급여액은 청구월의 익월 분부터 지급되고, 청구의 청구는 주소지의 시구정촌으로 되어 있다.

**3) 생활보호제도에 의한 소득보장**

일본의 생활보호제도는 경제적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자를 대상으로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해주기 위하여 빈곤선 이하의 저소득 가구에 최저생활비를 제공하여 최저한도의 생활을 보장함과 동시에 그 자립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급여자격은 엄격한 심사를 통해 제공된다.

2004년에는 99.9만 세대의 약 142만 3천명이 생활보호제도 관련 급부를 수급하였다. 1995년까지 계속적으로 감소하던 생활보호대상자의 비율은 1996년부터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이 중 고령자세대의 비율이 46.7%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다음으로 상병자 및 장애인세대가 36.1%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또한 8.8%로 그 비중이 가장 낮은 모자가정의 비율도 1999년부터 다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표 6. 세대유형별 피보호세대수의 구성비(2004년)**

세대형태	비율(%)
고령자세대	46.7
모자가정	8.8
상병자 및 장애인세대	36.1
그 외	9.4
계	100.0

자료: 생활보호의 동향편집위원회(2006), 「생활보호의 동향 2006년판」, 중앙법규출판.

일본은 1980년대 초반 생활보호수준이 일반 근로자 소비수준의 2/3를 넘어서게 되고 경제성장이 완만한 안정세를 보임에 따라 국민소비지출의 증가분만을 감안하여 최저생계비 수준을 설정하고 있다.

생활보호제도에 의한 급여액은 생활보호 신청가구 중 최저생활비에서 세대의 최종수입을 감산하는 것에 의해 계산된다. 따라서 세대의 최종수입이 최저생계비보다 작을 경우 이 차액이 보조금으로서 지급된다. 최저생계비는 생활, 주

택, 교육, 의료, 출산, 생업, 장례, 개호부조와 같은 8개의 부조를 합산하여 계산한다<sup>3)</sup>. 나아가, 최저생활보장수준(최저생계비)은 서로 다른 지역간의 생계비의 차와 세대구성원의 연령, 소재지를 고려하여 계산된다. 모든 부조는 현물급여의 형태로 제공되는 의료급여 등의 일부급여를 제외하고 현금이전의 형태로 제공된다.

생활부조 기준은 의·식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경비들인데, 1류비, 2류비, 각종 가산금으로 구성되어 있다. 1류비는 식비, 피복비 등의 개인단위로 소비하는 생활비로 연령별로, 2류비는 가구비, 광열비 등 세대 전체가 소비하는 생활비로 세대인원수별로 계산되며, 또한 특별한 수요가 발생하는 가구에 대해서는 각종 가산이 추가되는데 각종가산에는 임신부가산, 노령가산, 모자가산, 장애인가산, 개호시설입소가산, 재택환자가산, 방사선장애인가산, 아동양육가산, 개호보험료가산이 있다. 일본의 생활보호제도상 생활부조 구성체계를 도식화하면 [그림 1]과 같다.

**4) 노동재해(노재) 보상에 의한 소득보장**

노동재해(노재)보상은 업무상 또는 대기오염이나 의약품의 부작용, 교통사고 등 특별한 피해를 입어 장애인이 된 경우, 노동자재해보상보험법(노재보험법)등에 따라 그 장애의 정도에 따른 장애보상연금, 혹은 장애보상일시금 등이 지급

된다. 무엇보다 그 지급사유가 상술한 장애연금과 중복되는 경우 장애연금을 우선순위로 지급하고 장애보상연금은 그 지급액이 감액되는 등 병합조정하게 되어 있다.

**5) 세제우대조치에 의한 소득보장**

장애인 대상 세제우대조치는 소득세나 주민세의 공제, 의료비 공제, 상속세증여세, 사업세의 우편저금의 이자비과세, 자동차세나 경자동차세, 자동차취득세, 신체장애인용 물품이나 신체장애인 생활시설, 휴렐퍼서비스, 데이서비스, 쇼트스테이(short stay) 등의 사업에서 행해지는 자산 양도시 소비세 감면 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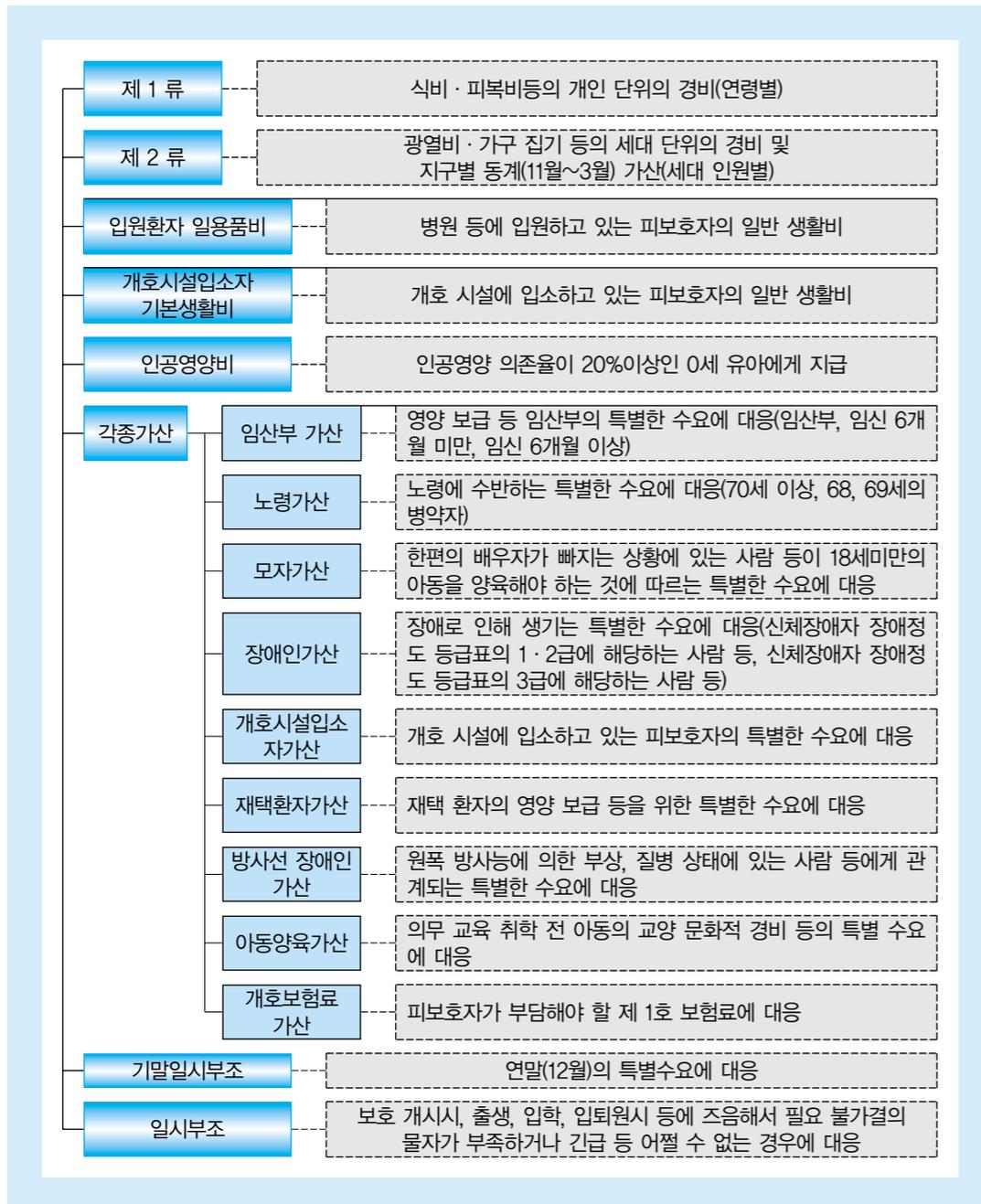
또한 공공요금의 할인으로는 JR이나 민간전철, 버스, 택시, 항공, 여객선 등의 공공교통기관의 운임이나 유료도로의 통행요금의 할인, 일본방송협회(NHK) 방송수신료나 우편요금, 간이보험료 불입, 전화 설치요금의 감면, 공영·공단주택의 우선입주, 주택금융공고의 할증용자, 생활복지자금의 대부 등이 있다.

**6) 심신장애인부양공제제도에 의한 소득보장**

기타 소득보장으로는 공적 연금과 별도로 심신장애인부양공제제도가 있는데, 이는 장애인을 부양하고 있는 보호자가 사망 또는 중증장애를 입었을 경우를 대비해서 생존 중에 매월 일정

3) 출산부조, 생업부조, 장례부조는 임시적으로 적용되므로 기본적으로는 생활부조, 주택부조, 교육부조, 의료부조, 개호부조의 합계가 최저생계비의 금액이 됨.

그림 1. 일본 생활부조 구성체계



자료: 후생노동성, 2003.

한 부금을 납입하여 장애인에게 종신 일정액수의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임의가입제도로써 장애가 있는 사람을 부양하고 있는 보호자들의 연대와 상호부조의 정신에 의거해,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함과 동시에, 장애인의 장래에 대해 보호자가 가지는 불안경감을 도모하는 목적으로 제도화 되었다. 이러한 심신장애인부양공제제도는 도도부현·지정 도시가 조례에 의거해 실시하고 있어 확실한 보장을 받을 수 있으며, 장애인 1명에 대해 2계좌까지 가입할 수 있다. 또한 부금은 소득세 및 지방세도 전액 소득공제되기 때문에 연금 및 조위금에는 소득세가 지출되지 않는다. 이 제도는 1970년에 발족해 그 후 약 38년이 경과했는데, 그동안 약 20만 2천명의 보호자들이 가입하여 약 4만 9천명의 장애인들에게 2006년도 말 현재 약 1,518억엔의 연금을 지불해 장애인들의 생활에 큰 버팀목이 되고 있다.

이 제도에 가입할 수 있는 보호자의 조건은 장애가 있는 사람<sup>4)</sup>을 실제로 부양하고 있는 보호자(부모, 배우자, 형제자매, 조부모, 그 외의 친족 등)이며, 다음의 모든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 그 도도부현·지정 도시 내에 주소가 있는 자
- 연령이 65세 미만인 자(연령은 매년의 4월 1일 기준의 연령임)

- 특별한 질병 또는 장애가 없고, 생명보험 계약의 대상이 되는 건강 상태인 자
  - 장애인 1명에 대해서 가입할 수 있는 보호자는 한 명
- 부금은 매월 정해진 날짜에 불입하며 가입자의 가입시 연령에 의해 1계좌당 <표 7>과 같다. 가입자가 65세(4월 1일 현재) 이후 최초로 돌아오는 가입 당월이 되고, 계속 20년 이상 가입했을 때는 그 후의 부금이 면제된다.

표 7. 가입자 연령별 부금월액

(2008년 4월 1일 현재)

가입시 연령	부금월액
35세 미만의 사람	9,300엔(5,600엔)
35세 이상 40세 미만의 사람	11,400엔(6,900엔)
40세 이상 45세 미만의 사람	14,300엔(8,700엔)
45세 이상 50세 미만의 사람	17,300엔(10,600엔)
50세 이상 55세 미만의 사람	18,800엔(11,600엔)
55세 이상 60세 미만의 사람	20,700엔(12,800엔)
60세 이상 65세 미만의 사람	23,300엔(14,500엔)

주: 부금률의 ( )은, 2008년 3월 31일 이전의 가입자의 부금월액  
 가입자 연령은 매년도(4월 1일부터 다음해의 3월 31일까지)의 첫날에 있어서의 연령으로 함  
 부금월액은 제도 개정에 따라 개정됨.

연금은 가입자가 사망하거나 중증 장애라고 인정되었을 때, 그 달부터 장애인에 대해 1계좌 가입한 사람은 월액 2만엔(연액 24만엔), 2계좌 가입한 사람은 월액 4만엔(연액 48만엔)의 연금

4) 장애가 있는 사람이란, 다음에 해당하는 자로 장래 독립생활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연령 상관 없음).

① 지적장애, ② 신체장애: 신체장애인수첩을 소지하고, 그 장애가 1급~3급까지에 해당하는 장애, ③ 정신 또는 신체에 영속적인 장애가 있는 재(정)신병, 뇌성마비, 진행성근위축증, 자폐증, 혈우병 등으로 그 장애정도가 (1) 또는 (2)와 같은 정도로 인정되는 자

이 지급된다. 이 때 연금의 지급 대상이 되는 중증장애는 조례에 정해진 중증장애 상태에 해당되어야 한다.

- 양눈의 시력을 영구히 잃은 것
- 저작 또는 언어의 기능을 영구히 잃은 것
- 양상지를 손관절 이상으로 잃은 것
- 양하지를 다리 관절 이상으로 잃은 것
- 한쪽 상지를 손관절 이상 잃거나, 한쪽 하지를 다리 관절 이상으로 잃은 것
- 양상지의 용무를 영구히 잃은 것
- 양하지의 용무를 영구히 잃은 것
- 10 손가락을 잃었던지 또는 그 용무를 영구히 잃은 것
- 양귀의 청력을 영구히 잃은 것

그러나 1년 이상 가입한 후에 가입자보다 먼저 장애인이 사망했을 때는 일시금이 가입 기간에 따라 조위금으로 지급된다(표 8>참조).

**표 8. 1년 이상 가입 후 장애인이 먼저 사망했을 시 조위금액**

(2008년 4월 1일 현재)

가입기간	금액
1년 이상 5년 미만의 사람	50,000엔(30,000엔)
5년 이상 20년 미만의 사람	125,000엔(75,000엔)
20년 이상의 사람	250,000엔(150,000엔)

주: 금액란의 ( )은, 2008년 3월 31일 이전 가입자 조위금액  
2계좌 가입 때는 각각의 가입 기간에 따른 금액이 됨.

또한 5년 이상 가입 후 가입자의 신청에 의해 이 제도로부터 탈퇴했을 때는 일시금이 가입기간에 따라 탈퇴일시금으로 지급된다(표 9> 참조).

**표 9. 5년 이상 가입 후 탈퇴시 탈퇴 일시금액**

(2008년 4월 1일 현재)

가입기간	금액
5년 이상 10년 미만의 사람	75,000엔(45,000엔)
10년 이상 20년 미만의 사람	125,000엔(75,000엔)
20년 이상의 사람	250,000엔(150,000엔)

주: 금액란의 ( )은, 2008년 3월 31일 이전 가입자의 탈퇴일시  
금액  
2계좌 가입 때는 각각의 가입기간에 따른 금액이 됨.

### 3. 시사점

일본 장애인 소득보장제도의 전반적인 내용을 알아본 결과, 일본에서는 장애인의 전 생애를 고려하여 소득보장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단계별 소득보장방안을 마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새로운 제도 도입이 이루어진 경우 그 과정에서 수급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보장받지 못할 경우 그에 대한 경과적 조치를 마련함으로써 장애인의 전 생애주기에 소득보장의 틈새가 없도록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연금제도와 관련해서는 전국민 연금제도 시행과 더불어 장애기초연금이 지급되고 있으며, 소득활동을 하고 있는 장애인에 대해서는 연장가입을 통해 보수비례부분의 후생연금이나 공제연금을 추가적으로 지급하고 있어 장애인의 소득보장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제도 도입시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수급권이 발생되지 않는 장애인을 위해서는 그들을 대상으로 한 특별장애급부제도가 제정·시행됨으로써 장애인 소득보장의 사

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다.

또한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는 수당과 관련해서는 1986년 20세 이상의 중증 재택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특별장애인수당제도가 시행되었고, 그 후 20세 미만 재택 장애인으로 대상을 확대하여 복지수당이 시행되었는데 이러한 수당제도 시행과정에서 특별장애인수당과 장애기초연금의 수급권이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경과조치로서 경과적 복지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연령대별 소득보장을 마련해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특별아동부양수당제도 시행과정 중 일본 국민이 아닌 장애아동 즉, 일본 국내 주소를 가지고 있는 장애아동도 모두 지급대상으로 확대함으로써 외국 장애아동도 소득보장의 체계 내에 포함시켰는데 이 또한 시사하는 바가 있다.

그 외 최근 논의되고 있는 제도 중 하나가 현재 일본에서 안정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심신장애인부양공제제도에 의한 소득보장이다. 이는 장애인 보호자들의 연대와 상호부조 정신에 의거하여 보호자의 불안 경감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도화되어 연금, 사망조위금, 탈퇴일시금 등 다양한 급여내용으로 운영되고 있어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이 많이 있다. 장애아동 특히 중증 장애아동이 있는 경우 장애아동의 부모들은 사후 남겨진 장애아동에 대해 커다란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어서 부모들로부터 이미 논의가 진행되어 왔고, 필요도 또한 매우 높은 제도이다. 따라서 새로운 제도 도입에 앞서 이러한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제도에 대한 심층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CSST](#)